

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 - 7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(가칭)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근거

-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

○ 필요성 :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
라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(가칭)	소재지	규모	정원(예정)
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	토정로 149, 3층(상수동)	125.25㎡	20명

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5년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

<단위:천원>

연도별	사업비용	세부내역	비고
총사업비	774,931	국비 92,412, 시비 640,519 구비 42,000	
2022년	147,045	- 인건비 : 128,445 - 운영비 : 18,600	
2023년	150,898	- 인건비 : 132,298 - 운영비 : 18,600	
2024년	154,867	- 인건비 : 136,267 - 운영비 : 18,600	
2025년	158,955	- 인건비 : 140,355 - 운영비 : 18,600	
2026년	163,166	- 인건비 : 144,566 - 운영비 : 18,600	

아. 산출근거 : 2021년 「우리동네키움센터」 설치·운영 계획

[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-1899 (2021.2.3.)]

자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돌봄시설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
-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·효율적인 관리·운영으로 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

나. 기타사항

- 추진일정안
 -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: 2021.9.~11.
 - 리모델링 설계·공사 등 환경조성 추진 : 2021.7.~2021.11.
 -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: 2022.1.

<아동복지법>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
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15.]

<사회복지사업법>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>

제9조(돌봄 시설 설치·운영)

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 시설 설치·운영 등을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2. 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
3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4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